

의안번호	2205379
의 퇴 인	박준태의원
회 답 일	2024.11.25.
추계번호	24D49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가목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관세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¹⁾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 사목 신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	의무규정
3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 아목 신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²⁾ 위반 범죄를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가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사목 신설	
3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아목 신설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세 사유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안 제6조제 14호가목·사목·아목)
-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개정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관세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및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 참고로, 현재 세관공무원의 수사 관련 예산은 수사대상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2024년 관세청 예산 기준 ‘밀수단속’사업으로 54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밀수단속 특정업무경비로 14억 6,611만원³⁾이 편성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

3) 조사요원 560명 × 218,000원